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토교통부

국토교통부

보다 나은 정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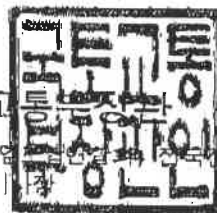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 재안내

1. 평소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「교통안전법」 제55조의2 및 제65조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차량이 장치를 미장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('20.1.1부터 시행)하고 있습니다.

*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법 시행령 별표 9 (과태료 1차 30만원/ 2차 100만원/ 3차 150만원)

- 이에, 우리 부에서는 지자체에 버스,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하고, 미장착한 차량이 적발된 경우, 행정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
-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무장착 대상 차량이 장착을 완료하였는지 재확인하고, 미장착한 차량이 있는 경우, 장착 의무를 다시 안내·통지하여 조속히 장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

국토교통부

수신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,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, 화물연대, 한국교통안전공단

주우관 홍성욱 ★시설사무관 이정식 교통안전복지과 전결 2020.2.14, 찰 운영중

협조자

시행 교통안전복지과-624 (2020. 2. 14.) 접수

무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6동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3864 팩스번호 044-201-5584 / seongok90@molit.go.kr / 대한민국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.